당사자(채무자) 표시 정정 신청서

[서울 서부지방법원 제5사법보좌관]

사 건 2023카임0000 주택임차권등기

채 권 자 이 00

채 무 자 한 00

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채무자를 잘못 표시하였음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 표시를 정정신청합니다.

* 다 음 –

1. 정정 전 피신청인의 표시
2. 한00

서울 마포구 토정로000 제801호 (토정동)

1. 정정 후 피신청인의 표시
2. 한00 (440000-1000000)

서울 마포구 토정로000, 제B01호 (토정동)

1. 오00 (490000-2000000)

서울 마포구 토정로000, 제B01호 (토정동)

위 피신청인들의 송달주소

서울 마포구 토정로000, 제801호 (토정동)

송달 전화 : 010-3338-0000 한00

1. 신청이유

임차권등기명령은 공유자 전원을 피신청인으로 해야 하는데, 공유자 중 1인을 누락하였습니다.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당사자에 대한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합니다. 따라서 당사자표시에 대한 정정신청을 합니다.

현재 전자소송상의 e폼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레거시 문서로 제출합니다.

2023. 10. 16.

신청인 이 00

**서울서부지방법원 제5사법보좌관 귀하**